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7나2042546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. 6. 23. 선고 2015가합206887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12. 13.
판 결 선 고	2018. 1. 1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. 1. 16. 접수 제1526호로 마친,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. 1. 23. 접수 제238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"4.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"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추가하는 부분】

"4.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

가.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B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미지급 분양대금을 상계처리 하여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. 따라서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.

나. 판단

을 제5,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B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가수금채권과 상계처리 됨으로써 모두 납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1) 원고는 B의 대차대조표(갑 제4호증)상 '외상매출금'이 B의 미수분양대금에 해당하는데, 2007년도에 2,402,543,790원이던 외상매출금이 2008년도에 0원으로 감소한 것은 원고가 그 사이에 미지급 분양대금 1,046,903,590원을 완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효림회계법인이 B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(을 제5, 6호증)에는 B가 감사범위를 제한하고 위 회사의 회계기록이 부실하여 2006년도 및 2007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.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B의 2008년도 재무제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. 따라서 위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.

2) 원고는 2008년도에 B에 대하여 약 21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, 그 증거로 B의 자금출납일보(갑 제10, 16호증)와 계좌거래내역 등(갑 제12호증의 1, 2, 갑 제13 내지 15호증)을 제출하였다. 위 증거들에 의하면 B의 2008년도 자금출납일보에는 '대표이사 가수금'으로 총 약 21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, 같은 액수의 돈이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.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B의 자금출납일보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. 더구나 B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수표나 현금으로 입금되었고, 위 돈을 원고가 납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가 2008년도에 B에 대하여 약 21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.

3) 원고는 2008년도에 B에 대하여 약 21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, 그 중 일부로써 미지급 분양대금 1,046,903,590원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렇다면 원고는 2008년 무렵에 B에 대하여 위 분양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약 10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 그러나 B의 2008년도 대차대조표상 '가수금'은 4,299,589원에 불과하다."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재판장 판사 임성근

판사 김구년

판사 박효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별지

목 록

1. [1동의 건물의 표시]

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 제테크센터동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15층 공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

지하2층 5924.90㎡

지하1층 5208.72㎡

1층 1830.15㎡

2층 3751.99㎡

3층 3954.00㎡

4층 3947.91㎡

5층 3954.00㎡

6층 ~ 9층 3960.72㎡

10층 3040.74㎡

11층 ~ 15층 2777.33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 공장용지 32.164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지하2층 제2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3.56㎡

[대지권의 표지]

소유권대지권 32164분의 36.5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02

2. [1동의 건물의 표시]

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 [redacted] 제테크센터동

철근콘크리트구조, (철근)콘크리트지붕 15층 공장, 제2종 근린생활시설

지하2층 5924.90㎡

지하1층 5208.72㎡

1층 1830.15㎡

2층 3751.99㎡

3층 3954.00㎡

4층 3947.91㎡

5층 3954.00㎡

6층 ~ 9층 3960.72㎡

10층 3040.74㎡

11층 ~ 15층 2777.33㎡

[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]

[redacted]시 [redacted]구 [redacted] 공장용지 32.164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제지하2층 제206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45.07㎡

[대지권의 표지]

소유권대지권 32164분의 39.65. 끝.